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확대 등〉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55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7. 22.
3. 회 부 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옴.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인상됐음.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3년 1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153.7원으로 지난 2019년 106.6원 대비 4년만에 약 44.2%p 증가했음.

특히 금형(金型)·주조(鑄造)·용접(鎔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려움을 겪

고 있음.

이에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에 “주요 에너지”를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 ⑩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이 법에서 “주요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중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u>
<u>⑪ (생략)</u>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	<u>⑫ (현행 제17항과 같음)</u>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현행	개정안
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 일반적으로 하도급대금은 원가계산에 의해 정해지며 제조원가·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의미함.¹⁾ 이 때 재료비는 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를 의미하며, 경비에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이 포함됨.²⁾

1)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7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9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³⁾는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력비나 수도광열비 등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비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⁴⁾

○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협동조합 조합원사 원자재 가격변동 및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1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120964호) 제안이유 중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답한 631개의 업체 중 289개(45.8%)의 업체가 납품대금에 공급원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289개 업체 중 54.7%가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단가인상 요청이 어려웠다고 답변하였고, 22.8%는 인상요청 시 거래단절 등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이었다고 답변하였음.

- 따라서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주요 에너지 비용을 포함한 공급원가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이에 연동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
- 다만,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업체 간 계약에 기반을 둔 거래관계에 대하여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 조정·변경을 강제하는 것으로 사적자치 원칙의 예외로 작동하는 제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은 그 결정 과정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⁵⁾에 따라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치고 있는 바, 그 변동폭이 경제상황에 의해 조정된다는 특성이

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있음. 즉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감염병의 확산,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등 수급상황 변동으로 인해 등락하는 원자재 가격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우선하고 향후 도입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의 추가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9